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년월일 : '99. 6. 7.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97.9.18)에 따라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정비하여 구 조례와 서울시 자치
구 조례준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 나. 제3차 서초구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
하여 조문을 정비코자함.

2. 주요골자

- 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및축산폐수시설의 용어의 변경 및 합병정화조신설
(안제3조 제1항)
-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처리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면제로 삼입(안 별표4
제1호, 제7호 나항,라항)
- 다.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지역은 기술관리인선임면제로 삼입(안 별표4
제17호,제18호, 제19호)
- 라.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조항은 지정사례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폐지코자함(현행 제8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마. 기타조문구조 및 자구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1항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의결 되었음

- 서울시폐관(67432-1481('97.11.1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
에 관한 참고자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시초구조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초구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8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① 구청장은 규칙제30조제1항제3항및규칙제5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부패조의”를 “부패조등의”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한다.

제7조중 “제19조제2항및규칙제27조”를 “제18조제2항및규칙제36조”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제19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9조제6항”을 “제18조제4항”으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정화조의 용량”을 “정화조의실제용량”으로하고 제11조

제1항제3호중“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한다.

제16조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로한다.

제17조제1항중 “제55조,제56조”를 “제79조,제80조”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제1항중 “제12조,제14조및제41조”를 “제15조,제18조제21조및제53조”로 하고
“제14조제3항”을 “제4조의2”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및기본계획)</p> <p>① (생략)</p> <p>②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분뇨및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제2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및기본계획)</p> <p>① (현행과같음)</p> <p>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분뇨및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제3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크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 오니를 투입하여야한다</p>	<p>제3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제3항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크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확보된 중 오니를 투입하여야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 (분뇨 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7조 (분뇨 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p> <p>②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에 한함)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8조 (삭제)</p>
<p>제10조 (분뇨 수집 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p>	<p>제10조 (분뇨 수집 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p>

현행	개정안
<p>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⑤(생략)</p> <p>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구정장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p> <p>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p>②~③(생략)</p> <p>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구정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남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구정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p> <p>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구정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남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p> <p>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u>단,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u>				
가. 오수정화시설 BOD, SS(mg/l) (1) 1일처리용량 100m ³ 미만 : 80초과 (2) 1일처리용량 100~200m ³ 미만 : 60초과 (3)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 40초과 (4) 골프장 : 10초과	10 20 50 50	20 5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합병정화조 BOD, SS(mg/l) (1) <u>처리대상인원 50인용 이하 : 20초과</u> (2) <u>처리대상인원 51~100인용이하 : 20초과</u> (3) <u>처리대상인원 101인용 이상 : 20초과</u>	10 20 50	20 50 100	50 100 100	100 100 100
다. 단독정화조 BOD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미만	10 20	20 50	5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자 - BOD, SS 500mg/ℓ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제2항, <u>제9조의2제2항</u>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1)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2)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60	100	100
<u>나. 합병정화조의 미신고자</u>	<u>10</u>	<u>20</u>	<u>30</u>	<u>50</u>
다. <u>단독정화조의 미신고자</u>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4. 법 <u>제12조</u> ,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u>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u>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사용				
(1)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10	20	30	50
(2)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40	60	100
<u>나. 합병정화조의 내용</u>	<u>5</u>	<u>10</u>	<u>20</u>	<u>30</u>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다. 단독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50	50	50	5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00	100	100	1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오수처리시설</u>·<u>분뇨처리시설</u> 또는 <u>축산폐수처리시설</u>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길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2)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6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라.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70	80	100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1)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2)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40	60	100	100
7.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u>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u>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관막힘, 오수의 역류 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자</u>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나)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50	100	100
(2) 합병정화조	5	10	20	3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p>나. 방류수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규칙 제9조 제1하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p> <p>(1) 1일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6월마다 1회 이상)</p> <p>(가) 최근 1년간 1회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p>(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6월마다 1회이상)</p> <p>(가) 최근 1년간 1회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10	20	30	50
<p>(3)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6월마다 1회이상)</p> <p>(가) 최근 1년간 1회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20	40	60	100
<p>(4)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분기1회이상)</p> <p>(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5	10	20	30
<p>(가) 최근 1년간 1회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10	20	30	50
<p>(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p>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20	40	60	100
<p>(나) 최근 1년간 미측정</p>	30	50	100	100
<p>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p> <p>(1) 오수정화시설(년 1회이상)</p> <p>(가) 1일 처리용량 200㎡미만</p> <p>(나) 1일 처리용량 200㎡이상</p>				
<p>(가) 1일 처리용량 200㎡미만</p> <p>(나) 1일 처리용량 200㎡이상</p>	50	100	100	100
<p>(2) 합병정화조(년1회 이상)</p>	100	100	100	100
<p>(가) 1일 처리용량 200㎡미만</p> <p>(나) 1일 처리용량 200㎡이상</p>	30	50	7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u>단독정화조</u> (년1회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100인미만	10	20	50	100
(나) 처리대상인원 500인미만	30	50	70	1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이상	50	100	100	100
(3) 축산폐수처리시설(년1회이상)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100	100	100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4) 간이축산폐수정화조(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 대상인원 500인이상 정화조의 배출방류수를 소독 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0	20	30	50
마.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나)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50	70	100
(2) <u>합병정화조</u>	10	20	30	50
(3) <u>단독정화조</u>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4) <u>축산폐수처리시설</u>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5) <u>간이축산폐수정화조</u>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8.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50	70	100	100
9.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11.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50 70	70 100	100 100
1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20 50	50 100	70 100	100 100
1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수집·운반업자 (2) 정화조청소업자,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	30 50	60 100	100 100	100 100
14.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5.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100	100	100
17.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8.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9.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기술관리인	20	40	60	100
(2) 분뇨처리담당자 등	50	70	100	100
20.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21.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23.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분뇨 자가 수집 운반업 [신규 변경 폐업] 신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 청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 호(명 칭)</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대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영업의 소재지</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영업의 종류</td> <td colspan="2">분뇨자가수집·운반업</td> </tr> <tr> <td>사무실 면 적</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able> <p>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수집 운반업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서 초 구 청 장 귀하</p> <p>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가 분뇨 수집운반업 신고증(변경신고이 경우에 한함) ※ 변경신청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p>	신 청 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분뇨자가수집·운반업		사무실 면 적		전화번호		<p><삭 제></p>
신 청 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분뇨자가수집·운반업																					
사무실 면 적		전화번호																					